

<http://dx.doi.org/10.17703/JCCT.2025.11.1.401>

JCCT 2025-1-41

마약류 위험요인의 환경분석과 마약 정책믹스의 탐색적 연구

Environmental Analysis of Drug Risk Factors and Exploratory Study of Drug Policy Mix

김상운*

Kim Sang-woon*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위험요인을 위한 정책수단의 유형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믹스(policy mix)의 이론적 모형과 효과를 제시하는 데 있다. 즉, 이 연구를 통해 마약류의 사회적 위험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다양한 마약규제 및 치료·재활정책(정책연계)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마약류 위험의 원인 분석과 마약 정책사례 및 환경분석, 마약류 위험요인의 유형별 마약규제와 치료·재활정책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모형 구축과 실증 분석, 마약류 위험 요인을 위한 정책수단의 유형별 정책믹스의 효과연구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마약 위험요인의 적용과 정책연계의 실제적 도구인 정책믹스(policy mix) 개발은 새로운 연구방법의 제시와 학술적 융합을 통해 파생되는 인력양성 및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책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정책믹스, 마약중독, 마약규제, 치료·재활정책, 정책목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theoretical model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ix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policy instrument to combat drug risks. In other words, this study aims to solve the problem of social risks of drugs and identify various sustainable drug control an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olicies (policy linkag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nalysis of the causes of drug risks, analysis of drug policy cases and environment, theoretical model construction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drug control an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olicies by type of drug risk factors, and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mix by type of policy measures to combat drug risks.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policy mix, a practical tool for applying drug risks and policy linkages, utilized in this study can be provided as a useful policy resource for human resources training and practitioners derived from the presentation of new research methods and academic convergence.

Key words : Policy Mix, Drug Addiction, Drug Regula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olicy, Policy Object

*정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4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4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1일

Received: October 5, 2024 / Revised: November 10, 2024

Accepted: December 1, 2024

*Corresponding Author: podori48@cu.ac.kr
Daegu Catholic Univ, Korea

1. 서론

마약 관련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하게 퍼져 실제로 드러나 있지 않은 암수 범죄로 국내에 확산된 마약류를 투약한 자의 수는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마약류 사범 45만 8,377명,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 중독자 약 25만 명(대검찰청, 2022)).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과 오남용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이후 살인, 성범죄, 이상동기범죄, 폭력 등으로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마약류 중독의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히 크다.

특히, 최근 들어 마약 거래는 국제적인 마약범죄조직의 대규모 국내 밀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마약유통이 급증하였고, 마약범죄도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SNS의 발달과 신종 비대면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수단들이 다양화되고 신종 저가 마약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10대 청소년, 20~30대 청년, 일반 회사원, 공무원과 평범한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에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마약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 6,513건, 2019년 8,038건, 2020년 9,186건, 2021년 8,088건, 2022년 10,3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찰청, 2022). 이를 뒷받침하듯 마약밀수 단속건수(단속중량)는 2018년 659건(362kg), 2019년 661건(412kg), 2020년 696건(148kg), 2021년 1,054건(1,272kg), 2022년 771건(624kg)으로 증감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4). 특히, 2021년부터는 건당 적발량이 1kg이 넘어가며 소량 밀수가 아닌 마약밀수가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자가소비 목적의 소량 밀수는 줄어들지만, 대량 밀수가 늘어난다는 점은 마약류 판매·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쉬워짐을 시사한다.

마약류의 사범들이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및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에 상해를 가하는 등 이차적 범행으로 이어지는 강력범죄 유형들의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1년부터 일어난 사건만을 보면, 마약 투약 후 친부를 칼로 살해한 사건(2021.7), 청와대 근무자의 필로폰 투약 사건(2022.1), 경찰관을 승용차로 친 이후 15m 정도 끌고 상해한 사건(2022.7), 고3 학생의 텔레그램을 통한 필로폰 밀수 및 유통사건(2022.7), 국내 유명작곡가의 필로폰 대량 소지·투약 사건(2022.9), 돈 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적발 사건(2023.1),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약 사건(2023.2), 이선균 수사 중 자살(2023.12) 등이 있다.

지속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재계 및 그 2·3세대 자녀들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류 투약 후 경찰 수사망 혹은 검거 등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모발염색, 모발·모근 제거 등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언론은 마약 투여 여부를 알기 위한 감정을 피하는 수법들을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일반인들도 막연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방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즉, 마약류 범죄의 통계는 수사 기관별 단순 적발 건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국내 마약류에 대한 범죄의 암수 비율은 28.57배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 볼 때, 마약 청정국 지위의 기준(인구 대비 5천만 명 기준에서 1만 명 이하 국가)을 초과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그 지위를 상실된 상태이다. 또한, 국내 마약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국제 마약밀매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마약시장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국제마약유통을 위한 마약의 대규모 밀반입 등의 손쉬운 경유지로 악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켜온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이 될지, 아니면 다시 회복하여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게 될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이다.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마약류의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마약류 범죄근절에 근본적 한계가 있으므로 강력한 마약규제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국내 불법유통에 의한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수요를 억제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마약류의 공급차단을 위해서는 관세청과 공조하여 공항,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밀반입 시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마약류의 제조, 유통, 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공조 및 관세청,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마약 밀매 조직의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을 차

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약 문제는 단기적 해결방법이 없다. 따라서 마약의 위험을 예측하고 퇴치하기 위해 강력히 시행되는 규제정책과 치료·재활정책 두 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약 정책믹스(policy mix) 전략이 필요하다. 마약류 위험 퇴치를 위한 정책수단은 정책목표의 달성 혹은 정책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환경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마약류 위험퇴치를 위해 마약류 사회문제 해결의 정책수단(정보, 권위, 재정, 조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책믹스의 특성(일관성, 신뢰성, 이해도, 긴밀성)에 집중시키는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마약의 개념과 심각성

마약은 마약의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 합성마약으로 나뉜다. 천연마약의 경우 양귀비, 코카인(엽), 아편, 추출 알칼로이드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합성마약은 페타딘, 메타돈 등이 있다. 여기서 추출 알칼로이드와 합성류 마약은 의료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신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 혹은 약물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약을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마약류라 일컫는다. 마약류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3가지로 분류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이지만 오남용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 필로폰도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고 있으며, 2023년의 전체 마약류의 사범에서 가장 높은 65%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57.1%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56.8%로 처음 50%를 돌파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도는 10대 마약류 사범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481명(2.6%)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였다. 마약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암수율 28.57배로 산정하는데, 이를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입하면 13,742명에 달한다. 미래 주역인 20·30세대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영역이 아니며,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마약 관련 신종범죄를 비롯한 심각한 국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2022년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Table 1. Age-specific breakdown of drugs in 2022

마약류	연령별							연령 이상	합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합계	481 (2.6)	5,804 (31.6)	4,703 (25.6)	2,815 (15.3)	1,976 (10.7)	2,166 (11.8)	450 (2.4)	18,395 (100)	
마약	108 (4.2)	231 (9.1)	122 (4.8)	128 (5.0)	218 (8.5)	1,550 (60.8)	194 (7.6)	2,551 (100)	
향정	332 (2.7)	3,945 (32.8)	3,259 (27.1)	2,285 (19.0)	1,569 (13.0)	463 (3.8)	182 (1.5)	12,035 (100)	
대마	41 (1.1)	1,628 (42.7)	1,322 (34.7)	402 (10.6)	189 (5.0)	153 (4.0)	74 (1.9)	3,809 (100)	

※ ()는 구성비 %

자료 2022년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대검찰청 2022)

2. 정책믹스

정책믹스를 정의할 때 정책목표 믹스와 정책수단 믹스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목표 믹스는 일반적으로 분배 문제 및 기타 정치적 이슈의 영역에 있는 반면, 정책수단 믹스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말한다. Hood(1986)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수단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정책수단의 효능과 탐지를 목적으로 네 가지 자원으로 구분하며, 정책수단의 유형은 A : 정보(Nodality), B : 재정(Treasure), C : 권위(Authority), D : 조직(Organization)으로 구성된다.

표 2. 정책수단의 유형

Table 2. Types of policy instruments

정책수단 유형		세부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	
A	정보 (Nodality)	정보수집	실태조사, 연구개발, 기술개발, 데이터 구축·개발·운영·관리
		정보제공	홍보, 우수사례 소개, 정보공개, 캠페인
		정보활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보급, 서비스제공, 교육자료 배포
B	재정 (Treasure)	현금지원	자격부여, 승인, 인증, 권한부여
		현물지원	법·제도적 제한·통제, 권고, 할당제
		징수	모니터링, 보고, 심문, 검사, 성과평가
C	권위 (Authority)	권한/자격부여	보조금, 지원금, 장려금
		공적 규제·관리	시설확충, 장비지원, 인프라 구축, 포상
		점검·평가	과세, 벌금, 과태료
D	조직 (Organization)	기존조직(유지)	인력확보, 조직 전문성 강화
		조직신설·변화	조직신설(책임운영기관, 공공기업설립, 민간위탁 등), 조직 통폐합
		협업	민·관 / 관·관 협력

마약의 위험요인으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드러나면, 정부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마약 문제의 경우 위험 인식과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주제이다. 마약의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마약류 위험도치를 위한 마약규제 정책과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정책이라는 정책믹스를 찾는다. 이 유형이 찾아지면 그 유형에 따른 마약규제와 치료·재활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림 1]에 제시된 정책믹스가 설명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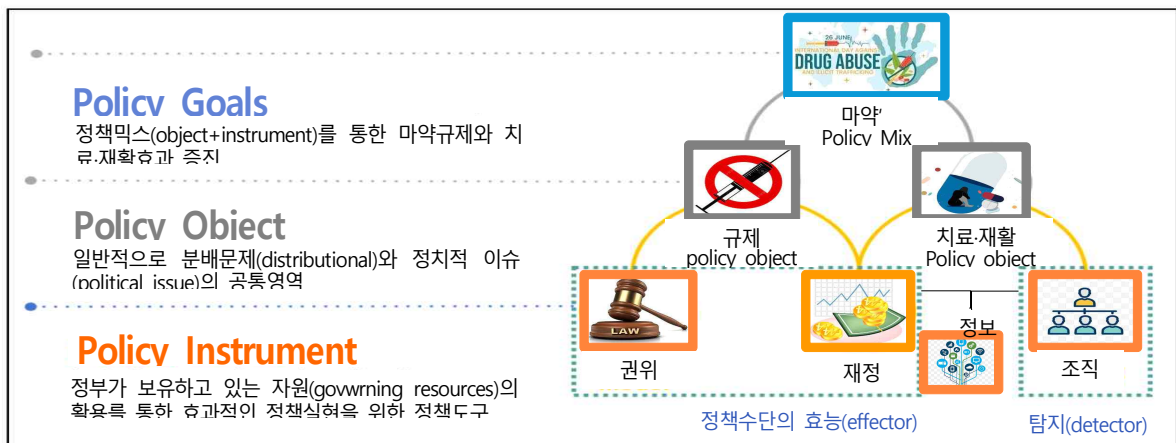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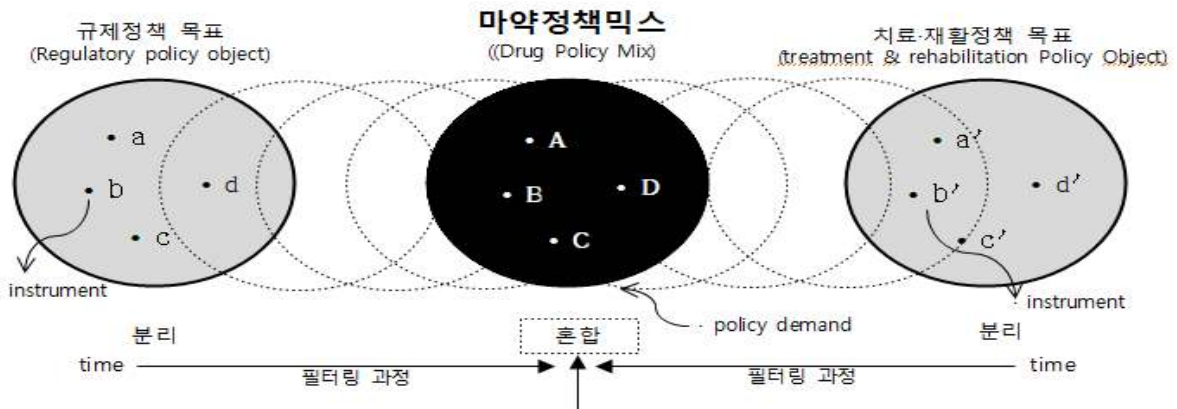


그림 1. 마약류 환경

Figure 1. Risk Factor Environment and Drug Policy Cases and Type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마약류 범죄를 위한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및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국내 마약 정책의 개선방안에 연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마약 밀매에 대한 실태조사, 마약류에 대한 중독예방사업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마약류 위협의 확산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마약규제정책과 치료·재활모델을 활성화하여 정책 연계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는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기존 연구의 분야별로 살펴보면, 마약사범 대한 갱생 보호와 관련된 정책(공정식·최주희, 2022; 박주희, 2022; 성수영, 2022; 강준혁, 2021),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고윤순, 2023; 류창현, 2023; 박혜영, 2023; 유숙경, 2023; 양혜정, 2022; 조영석, 2022; 최미경, 2021; 윤현준, 2021), 국내 마약류 정책 변화와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김대권, 2023; 이용주, 2023; 박성수, 2022; 김일옥 외, 2020; 김우준, 2017; 박성수, 2016), 마약밀매 조직과 마약범죄(신재우, 2022; 정재훈·노성국, 2022; 양양규, 2021; 신상철, 2020), 신종마약류 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신재현, 2023; 이무송, 2022; 안상원, 2019; 염건웅, 2019; 주현경 외, 2017), 국제 마약류 정책 변화와 대응 방향(김지웅, 2023; 김호, 2023; 이주용, 2023; 허경미, 2023; 박성수, 2022; 김일옥 외, 2020), 마약 밀매에 관한 사례연구(박진실, 2022; 유숙경, 2021), 마약류 심각성의 국민 인식에 관한 연구(정현주, 2023; 이연우, 2022; 이용희, 2022; 김태우, 2021) 등이 있다.

지난 10년 마약류 사범은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사범의 증가 원인에 대해 인터넷(다크웹), SNS(텔레그램) 등을 통한 해외 마약류 공급이 쉬워지고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구입이 증가한 것이라는 연구(박진실·장노순, 2022)의 주장처럼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 유형과 관계없이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마약류 사범은 2.9배, 대마사범 2.7배, 향정신성 사범 1.7배의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김남희, 2021). 그리고 청소년 마약사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이른 시일 내에 마약범죄의 가해 및 피해 연령층이 청소년이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 마약범죄의 주된 원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광고에 대한 정보 및 SNS를 통한 마약 구매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하는 유통시스템 등으로 최근 펜타닐, 애더달 등의 신종마약류 투입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의 대처방안으로 사전 예방교육과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청소년들이 신종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사하고 마약범죄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이은영·전연규, 2022). 또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마약범죄 계수 대비 1.2~3.3배 이상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과 마약사범의 출신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약류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신재현, 2022). 최근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마약류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누구나 범죄자 또는 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마약류에 대한 대중의 인식개선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이연우, 2022). 결국 마약 위협에 대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3>은 마약류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선행연구 검토
 Table 3. Reviewing the research

문헌 조사	통계 분석	사례 조사	전문가 조사	면담 조사	학자
●	●	●			김남희(2021), 김태우(2021), 윤현준(2021), 박진실·장노순(2022), 박주희(2022), 이무송(2022), 김대권(2023), 이용주(2023), 신재현(2023)
●		●		●	안상원(2019), 염건웅(2019), 유숙경(2021), 최미경(2021), 성수영(2022), 신재현(2022), 이은영·전연규(2022), 이연우(2022), 류창현(2023)
●	●		●		박성수(2016), 김우준(2017), 주현경 외(2017), 김일옥 외(2020), 강준혁(2021), 김태우(2021), 이용희(2022), 조영석(2022), 유숙경(2023), 정현주(2023)
●		●			박성수(2022), 양혜정(2022), 정재훈·노성국(2022), 고윤순(2023), 김지웅(2023), 김호(2023), 이주용(2023), 허경미(2023)

III. 마약 위험 변화 양상에 대한 국·내외 사례연구

1. 마약류 위험 양상에 대한 국내 환경변화

마약류 범죄는 이제 더는 특정 유명인, 직업군에 국한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일반 대중은 마약과 연루된 사람들이 연예계, 유흥업 종사자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50만~100만 명인 1~2% 정도, 즉 백 명 중 한두 명은 마약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2021년 마약사범 중에서 연예계는 72명의 0.4%, 유흥업 종사자는 94명의 0.6%로 조사되었고, 회사원이 1,010명의 6.3%, 학생이 494명의 3.1%로 이들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마약은 이제 특정 및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바로 우리 이웃이나 주변 사람의 이야기이다. 앞으로 더 심각한 것은 마약류 사범의 연령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2018년까지는 주로 40~50대의 중장년층이 많았지만, 2021년 이후에는 20~30대가 전체의 마약류 사범의 56%로 상당히 많은 젊은 청년들이 마약중독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4. 마약 위험 환경변화와 배경

Table 4. Changing drug risk landscape and backgroun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과정		
마약법 [제정 1957.4.23 법률 제440호]	약사법(중독·습관성의약품관리) [개정 1965.4.3 법률 제1694호]	대마관리법 [제정 1957.4.7 법률 제2895호]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정 1970.8.7 법률 제2230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정 1979.12.28 법률 제321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0.1.12 법률 제6146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2.11.2.)		
국내 마약의 환경변화		
1. 국내 마약은 이미 일상의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 -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30대 마약사범(전체의 60% 이상) 대폭 증가		
2. 불법 마약류 외에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매우 심각한 수준 - 진통제(펜타닐), 식욕억제제(나비악), 마취제(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48종)으로 국민 2.7명 중 1명(1,885만 명)이 사용경험 있음		
3. 마약류의 높은 의존성·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은 재범률(35%)이 높고 치료·재활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 - 마약류 중독자 1개월 입원 치료 시 치료비용 최소 500만 원 소요		

2. 미국

1) 마약 관련 법과 제도

2021년 기준 12세 이상 마약중독 문제가 있는 미국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6.5%를 차지하는 4천 6백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마약 과다 사용으로 인한 사망은 2019년 70,630명 이후 2021년도 106,0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통제와 처벌 강화를 중시하던 1950년대, 부분적 치료·재활 강화를 중시하던 1960~70년대, 다시 통제와 처벌 강화를 1980년대에 강조하였고 1990년대는 치료·재활에 다시금 중시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마약류 남용 예방, 규제, 치료·재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 사용 그 자체를 범죄로 취급하고 마약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령, 국가 정책, 치료적 사범, 사회 재활의 연속성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마약류 관련 정책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 관련 미국의 법률은 크게 규제, 치료 및 재활로 나뉘볼 수 있다.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규제약물법(CAS)이며 주로 5개의 약물로 분류(schedule)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치료 및 재활에 관한 법률은 21세기 치료법(Opioid 남용대책 예산분배), 중독과 회복법(예방, 치료 및 회복을 위한 법), SUPPORT 법(Opioid 과

복용 대처를 위한 각종 전략 명시 등)이 있다(이주용 등, 2023).

2) 치료 및 재활 체계

미국은 「약물법원(Drug Court)」을 통해 처벌과 더불어 약물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자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약물법원은 포화상태의 교정시설, 마약사범의 출소 후 높은 재범률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9년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 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이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된 후, 약물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한다. 대상자는 약물법원에 정기적인 출석을 해야 하며 약물 테스트에도 수시로 응해야 하고 약물 치료과정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재판 전 전환 절차’ 과정에서 참가자가 치료과정을 끝까지 이수하면 공소가 기각된다. 그러나 치료과정에 실패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기소 후 판결 전 절차’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유죄 등을 인정한 경우 재판을 일시 중단하고, 프로그램을 완수하면 기소가 무효화되거나 철회되며, 프로그램을 실패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바로 보호관찰이나 치료 등을 조건으로 약물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유죄 기록이 남지만,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구금형을 면하거나 보호관찰 의무사항이 경감된다.

한편, 미국의 치료 및 재활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보건부(HHS) 산하의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국(SAMHSA)이다. SAMHSA는 약물남용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하여 예방, 치료, 회복 프로그램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고 약물남용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며 보조금을 통하여 교육 및 훈련, 예방 프로그램과 조기개입 활동, 치료서비스, 기술지원을 포함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이주용 등, 2023).

3. 일본

1) 마약 관련 법과 제도

일본의 마약 확산의 역사는 제1차 각성제 확산시기(1945~1956), 헤로인 시기(1958~1963), 신나 확산기(1965~1975), 제2차 각성제 확산시기(1995~)라고 볼 수 있다. 최근 10년의 각성제 사용은 감소하였으나 대마, 마약류, 아편 등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전영실 등, 2020). 일본은 마약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마단속법」, 「각성제 단속법」,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아편법」,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강력한 처벌과 다각적인 마약류 규제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병원 그리고 민간 단체 등이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다.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를 내각에 설치하여 「약물남용방지 5개년 전략」을 수립하여 각 부처의 약물남용 대처 상황과 지방본부의 약물남용 대처 상황을 공유하여 전략을 관리하고 있다(이주용 등, 2023). 일본은 1998년 최초로 수립된 「약물남용방지 5개년 전략」을 2018년에 제 5차 약물남용방지 5개년 전략으로 수정 및 보완 해오고 있다. 이 전략의 목표는 홍보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고, 기존의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으로 약물 재남용을 예방하고, 약물밀매조직 제거 등이다. 일본은 약물에 대해 단속과 처벌, 국제협력과 치료 재활 그리고 예방 모두를 중요시한다.

2) 치료 및 재활 체계

후생노동성에서는 예방전략과 치료 및 재활전략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예방전략인 「약물남용방지대책」의 1차 예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2차 예방은 초범 및 재범자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다.

치료재활사업인 「의존증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관계기관 협력회의 실시, 상담 지원, 의존증의 치료 및 회복지원, 가족지원, 인재양성 등이다. 정신보건복지센터 등에서는 약물의존증자에 대한 표준화된 집단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인 SMARPP(세리가야 Methamphetamine 재남용 방지 프로그램) 등의 집단치료회복프로그램을 보급·실천한다(이주용 등, 2023). 이 외에도 전국에 100개소 이상의 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인 다르크(DARC)를 포함한 회복지원 시설과 자조모임, 전국 약물 의존증자 가족연합회가 등이 있다. 또한 2000년 다르크 부속으로 박사나 법률 전문가 등 다르크재활프로그램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인 아파리(APARI)도 존재한다.

4. 싱가포르

1) 마약 관련 법과 제도

싱가포르는 강력한 단속 및 엄격한 사법체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변의 마약 공급국들과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정책의 통제력이 유지되고 있다. 2012년 3,507명을 기록했던 싱가포르의 약물남용 체포 건수는 2022년 2,826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마약류남용법(MDA)」은 중앙마약청(CNB)의 집행 권한뿐만 아니라 규제 약물의 밀매, 제조·수입 또는 수출, 소지 및 소비를 포함하는 모든 약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공급범죄와 사용범죄로 구분하여 차별적인 형량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공급범죄의 경우 태형과 사형이라는 강력한 형을 부과한다. 그리고 특정 약물을 공급하거나 또는 대량 공급을 하는 경우 최소 20년의 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중앙마약청(CNB)과 경찰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체포 및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다. 약물 검사를 거부하면 마약류 사용 또는 소지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싱가포르는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별도의 약물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지만 1994년에 「싱가포르 약물 상황 개선 위원회」가 구성되어 엄격하고 강력한 법 집행, 예방적 약물 교육, 치료 및 재활, 재남용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및 지속적인 재활의 네 가지 주요 전략을 통해 총체적·통합적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2) 치료 및 재활 체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치료 기관으로는 국립중독관리서비스(NAMS)가 있다. 국립중독관리서비스는 알코올·마약·도박·게임 등 각종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하며 전문가 다학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이주용 등, 2023). 싱가포르반약물연대(SANA)는 1972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기관이며 중앙마약청(CNB)의 업무를 보완하며 주요 업무로는 사례관리, Step-Up Centre 운영, 가족지원사업 등이 있다. 또한 대부분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간 주거시설(halfway houses), 출소자를 지원하는 기관인 SACA(Singapore After-Care Association) 등이 기타 재활을 위한 시설로 존재하고 있다(이주용 등, 2023). 싱가포르는 약물 중독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그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 및 재활 체계와 사법 시스템이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IV. 정책적 논의 및 결론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때가 있었으나, 2016년 기준 마약사범이 1만 4214명으로, 10만 명당 28명에 이르러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한 지 오래된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2023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최초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2022년 대비 50.1%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급증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인들 역시 마약류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접한 후 마약 투약의 호기심, 구하기 쉬운 온라인 유통 경로 확대, 유흥가의 진화 등은 마약의 사회적 이슈화를 증가시켰다. 평범한 일반 국민이 마약 중독자가 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같은 거대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정책은 수요공급에 대한 차단 정책을 전개하였다면, 앞으로는 마약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마약 문제는 단기적 해결방법이 없다. 따라서 마약의 위험을 예측하고 퇴치하기 위해 강력히 시행되는 규제정책과 치료·재활정책 두 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약정책믹스 전략이 필요하다. 마약류 위험 퇴치를 위한 정책수단은 정책목표의 달성 혹은 정책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환경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마약류 위험을 퇴치하기 위해 마약류 사회문제 해결의 정책수단(정보, 권위, 재정, 조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책믹스의 특성(일관성, 신뢰성, 이해도, 긴밀성)에 집중시키는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위험퇴치를 위한 정책수단의 유형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믹스의 이론적 모형과 효과를 제시하는 데 있다. 즉, 이 연구를 통해 마약류의 사회적 위험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다양한 마약규제 및 치료·재활정책(정책연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해외의 여러 나라들 역시 마약 관련 정책 및 개입은 우리나라의 현행 정책과 치료 및 재활 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먼저, 마약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내 국제 마약단속 임시조직(T/F) 중심으로 마약을 주로 공급하는 국가인 아세안,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특별수사팀과 마약수사실무협의체에 적극적인 참여와 경찰의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광역단위 합동수사 강화에 대한 업무체계의 구체적인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마약류 관련 유관기관인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과 검찰 및 경찰의 국내외 마약사범·신종마약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마약조사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체계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심하여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 과학검색장비, 지하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마약류 범죄 관련 분야의 조사요원에 대한 보호장비를 확충하고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을 강화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중독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마약류의 문제는 전반적 영역에 걸쳐 사회문제의 심각한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 위험의 확산 억제와 규제와 치료·재활의 충족을 위한 규제와 치료·재활의 정책 연계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마약류 위험의 쉼표 전략을 통해 마약류의 파생 문제들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의 사회적 위험억제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다양한 주제를 통합적이며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같이 마약류 위험 특성 문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검증과 마약류 위험 정책 연계의 해결수단인 규제와 치료·재활의 정책 연계 개발을 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향후 정책 입안자들의 정책적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J.H. Kang. "A Study on Risk Factors of Using Narcotic of Drugs User",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60, pp. 51-71, 2021. DOI:10.17924/solc.2020.60.51
- [2] Y.S. Koh. "Suggestions to Improve Treatment·Rehabilitation Systems for Drug Abusers in Ko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Vol. 84, pp. 1-27, 2023. DOI:10.35422/cwsk.2023.84.1
- [3] D.K. Kim. "A Study of Limitations of Drug Crimes and Suggestion for Efficient Control",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 20, No. 2, pp. 1-14, 2023. DOI:10.25023/kapsa.20.2.202305.1
- [4] Y.S. Kim "Drug Smuggling Status and Countermeasures : A Focus on EU Cases and Implications",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Vol. 13, No. 3, pp. 1-16, 2023. DOI:https://doi.org/10.26606/kaac.2023.13.3.1
- [5] W.J. Kim. "A Study on the Change of Drug Policies",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Vol. 7, No. 2, pp. 41-57, 2017. DOI: 10.1081/ja-100000233
- [6] I.O. Kim, H.N. An and S.K. Kim.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Drug Abuse Crimes in Singapore", Journal of Law, Vol. 31, No. 1, pp. 275-300, 2020. DOI:10.33982/clr.2020.02.31.1.275
- [7] J.W. Kim. "A Study on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of Drug Offenders",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5, No. 3, pp. 469-479, 2023. DOI:10.33645/cnc.2023.03.45.03.469
- [8] C.W. Kim, H.R. Song and W.J. Kim. "Effects of Trust through Risk Communications on Risk Perception - Focused on the Survey of Experts", Crisisonomy, Vol. 11, No. 6, pp. 119-133, 2015.

- [9] T.W. Kim. “A Study on the Responses to the Analysis of the Public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Narcotics”,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Vol. 12, pp. 125-154, 2021. DOI:10.36847/knspssa.2021.12.5
- [10] T.W. Kim.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Education for Juvenile Drug Crimes: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Scientific Investigators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Vol. 35, No. 1, pp. 73-106, 2021. DOI:10.35147/knpsi.2021.35.1.73
- [11]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23 drug-related statistical data”, Seoul: Prosecution Service, 2023.
- [12] C.H. Ryu. “New Drug Rehabilitation Using Virtual Reality: The Future Perspectives of Addiction Interventions”,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Vol. 13, No. 2, pp. 1-28, 2023. DOI:https://doi.org/10.26606/kaac.2023.13.2.1
- [13] S.Y. Park. “Suggestions to Address Juveniles’ Drug and Substance Abuse Problems”, Korean Journal of Correctional Discourse, Vol. 17, No. 1, pp. 29-63, 2023. DOI:https://doi.org/10.46626/affc.2023.17.1.2
- [14] S.S. Park. “Korea’s Drug Response Direction due to Changes in Global Drug Policy”,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Vol. 12, No. 1, pp. 57-81, 2022. DOI:https://doi.org/10.26606/kaac.2022.12.1.3
- [15] S.H. Park. “A Study on the Problems of Adolescent Drug Crime”,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Vol. 13, No. 3, pp. 67-91, 2023. DOI:https://doi.org/10.26606/kaac.2023.13.3.4
- [16] J.S. Park and N.S. Chang. “Threats of the Darknet and Global Drug Trafficking and Their Responses”,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Vol. 21, No. 1, pp. 75-106, 2022. DOI:https://doi.org/10.38084/2022.21.1.4
- [17] J.H. Park. “Community based treatment and care for juvenile substance abuse in Japan”,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Vol. 35, No. 2, pp. 105-131, 2022. DOI:10.35930/KJPR.35.2.5
- [18] H.N. Park. “Treatment Programs for Prisoners with Drug Abuse and Addiction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Korean Journal of Correctional Discourse, Vol. 16, No. 1, pp. 1-27, 2022. DOI:https://doi.org/10.46626/affc.2022.16.1.1
- [19] S.Y. Sung. “A Study on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the Control of Narcotics Crime”,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4, No. 12, pp. 427-437, 2022. DOI:https://doi.org/10.33645 /cnc.2022.12.44.12.427
- [20] S.C. Shin. “A Study on the Way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olving Problems with Drug Smuggling - Focusing on Clause 16 of the UN SDGs -”,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 17, No. 1, pp. 77-98, 2020. DOI:10.25023/kapsa.17.1.202002.77
- [21] J.W. Shin. “Nature of Drug Crime and the Trend of Drug Trafficking in Korea”,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Vol. 18, No. 4, pp. 83-102, 2022. DOI:http://dx.doi.org/10.25277/KCPR.2022.18.4.83
- [22] J.H. Shin.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Increasing New Drug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9, No. 2, pp. 270-279, 2023. DOI:https://doi.org/10.15683/kosdi.2023.6.30.270
- [23] S.W. An. “A Study on Trends and Control Strategy of Drug Offenders”,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Vol. 9, No. 4, pp. 87-108, 2019. DOI:10.26606/kaac.2019.9.4.5
- [24] K.H. Eom.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Drug Interdiction Policy, Crime Proliferation”,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6, No. 1, pp. 47-67, 2008.
- [25] Allen, C.. “The links between heroin, crack cocaine and crime: Where does street crime fit i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5, No. 3, pp. 355 - 372, 2005. DOI:https://doi.org/10.1093/bjc/azi001
- [26] Anderson, J.. “What to Do About “Much Ado” About Drug Courts?“,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Vol. 12, No. 5, pp. 469-475, 2001. DOI : DOI:10.1016/S0955-3959(01)00109-8
- [27] Ashton, M.. “DTTO: The Scottish way cuts the failure rate”, Drug and Alcohol Findings, Vol. 9, pp. 14 - 15, 2003.
- [28] Barton, A.. “Breaking the Crime-Drug Cycle: The Birth of a New Approach?“,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38, No. 2, pp. 144-157, 1999. DOI:https://doi.org/10.1111/1468-2311.00123
- [29] Longshore, D. and C. Teruya. “Treatment Motivation in Drug Users: A Theory-Based Analysi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Vol. 81, No. 2, pp. 179-88, 2006. DOI:10.1016/j.drugalcdep.2005.06.011

※ 이 논문은 202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1024481)